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7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누12627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A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장
제 1 심 판 결	[redacted]법원 2020. 9. 10. 선고 2019구합400 판결
변 론 종 결	2021. 4. 8.
판 결 선 고	2021. 5.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7. 원고에게 한 압류해제거부처분(별지1 기재 각 압류처분에 관한 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7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8행의 "별지2 부동산 목록"을 "별지3 부동산 목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4행 마지막에 "이는 구 지방세징수법 제57조 제2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당해 부동산 등에 관하여 발생한 당해세에 한정되지 않고,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이전까지 전소유자에게 발생한 다른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6행의 "12. 17."을 "3. 15."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6행부터 제8면 제10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구 지방세징수법 제4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2항은 '제5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호(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4.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서 정하고 있는 압류해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7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 및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압류재산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재산이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지방세 체납액 중 일부인 이 사건 수익용 부동산에 관한 체납액 74,760,850원을 납부하였으나, 앞서 본 증거들, 갑 제23, 2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익용 부동산이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구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수익용 부동산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원고의 지방세 체납액은 원고가 2018. 3. 15. 납부한 74,760,850원을 제외하고도 15억 원을 상회하였고, 2019. 4. 30. 기준으로는 16억 원을 넘어섰으며, 그 중 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본세는 2007년경부터 10년 이상 체납된 상태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교육용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2017. 12. 7. 당시 312억 원 상당이었고, 이 사건 교육용 부동산이 그 공매절차에서 여러 차례 유찰되어도 매각금액을 감정평가액의 50%인 156억 원 이하로 매각할 수 없는 점, 설령 원고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이 사건 교육용 부동산의 가치가 상당하여 피고의 지방세 체납액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7

대한 최우선 변제권이 보장되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이 사건 교육용 부동산만으로도 충분한 변제가 담보되므로, 이 사건 수익용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7. 11. 7. 이 사건 교육용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이래 매년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수년에 걸쳐 온비드를 활용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초 매각 예정가격(허가금액)의 50%를 매각금액의 최저한도로 하여야 한다는 교육부장관의 허가조건에 따라 2020. 11. 20. 공매절차에서 매각금액을 15,625,324,350원(= 감정평가액 31,250,648,700원 ÷ 2)으로 감액하여 공고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계속 유찰되고 있어 매각 여부가 불투명하다. 반면 이 사건 수익용 부동산은 그 용도가 오피스텔인 구분건물이어서 이 사건 교육용 부동산보다 환가절차가 훨씬 용이하다.

또한 이 사건 교육용 부동산에 대한 교육부장관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은 학교법인인 원고만이 할 수 있고,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거나 원고를 대위하여 처분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압류재산이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체납된 지방세를 적시에 용이하게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도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이 사건 교육용 부동산의 매각 여부 및 그 매각 시기가 불투명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수익용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거나 납세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초과압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17면 표 하단의 "체납총액/감정가총액 = 0.0053709875"를 "체납총액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7

/감정가총액 = 0.05370977242"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7

별지1

압류해제를 구한 압류처분

1. 피고가 2007. 8. 7. 피고청 세정과-AS로서 체납액 757,590원으로 별지2 부동산 목록 순번 제1, 2번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2. 피고 산하 [redacted]구가 2012. 6. 29. [redacted]구 세무과-AT로서 별지2 부동산 목록 제3 내지 9번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3. 피고 산하 [redacted]구가 2013. 2. 21. [redacted]구 세무과-AU로서 별지2 부동산 목록 제10번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4. 피고 산하 [redacted]구가 2013. 8. 20. [redacted]구 세무과-AV로서 별지2 부동산 목록 제11번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5. 피고 산하 [redacted]구가 2016. 5. 16. [redacted]구 세무과-AW로서 별지2 부동산 목록 순번 제12 내지 28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끝.